

## 해외송금 서비스 약관

FLOBANK(이하 “은행”이라 함)은 본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본 약관을 열람

하거나 은행에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적용 범위

- ① 고객이 은행의 FLOBANK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FLOBANK 해외송금 서비스(이하 “이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신청한 송금 주기에 따라 정한 송금 금액을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정한 해외의 계좌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고, 관련 법령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제2조 서비스 이용 신청

- ① 고객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송금 주기, 송금할 통화와 금액, 송금 시작일과 종료일

나. 송금액과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비용(이하 “송금수수료 등”이라 함)을 결제할 고객

명의 원화예금의 계좌번호(이하 “출금계좌”라 함)

다. 송금을 받을 사람(이하 “수취인”)의 이름,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외국의 금융기관(이하 “송금

수취은행”이라 함) 및 그 계좌번호

라. 송금을 중계하는 금융기관(이하 “송금 중계은행”이라 함) 또는 송금 수취은행 등의 제3자가 부과

하거나 청구하는 수수료나 비용을 부담할 자

마. 기타 송금인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고객이 ①항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송금 예정 일의 전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3조 송금사유 및 송금한도

이 서비스로 송금 가능한 송금사유 지정항목과 송금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송금사유 지정항목 송금한도

##### 최소 송금금액

1회(1일) 연간

소액송금 미화 5천불 미화 5만불 1) 외화정액송금

: 미화100불 상당액

2) 원화정액송금

: 원화 10만원 상당 외화금액

3) 계좌잔액송금

: 원화 10만원 상당 외화금액

4) 잔액즉시 송금

: 원화 10만원 상당 외화금액

증빙서류 미제출 미화 1만불 미화 5만불

해외 유학/체재비 미화 10만불 미화 30만불

외국인 보수 송금 미화 1만불 미화 5만불

해외이주비 미화 10만불 제한없음

재외동포 재산반출 미화 10만불 (증빙서류 범위내)

### 제4조 송금

① 고객은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송금하는 사유와 그 금액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이하 "송금 증빙서류"라 함)를 은행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2조 제1항의 신청 내용대로 송금액을 지급 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때 송금 수수료 등도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송금 예정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송금합니다.

④ 송금 예정일이 특정일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송금이 예정된 월에 특정일자가 없을 때에는 송금이 예정된

월의 마지막 일자에 송금합니다. 단, 그같이 송금되는 일자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송

금합니다.

⑤ 출금계좌에서 송금액을 출금할 경우 적용환율은 송금시점의 은행에서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

용합니다.

## 제5조 서비스의 해지 및 정지

① 서비스의 이용 해지는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해지 신청하도록 합니다. 단, 아래 제2항의 각

호에서 언급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정지가 계속하여 1년간 계속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

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해소시까지 송금이 정지됩니다.

가. 출금계좌의 지급 자금이 모자라거나 압류 등 기타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송금액이나 송금 수수료 등

을 출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는 경우

나. 송금사유 지정항목별 송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등록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

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서 따라 필요한 송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천재지변, 전쟁, 폭동, 파업, 정전, 통신장애, 국가 긴급조치, 기타 은행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

우

#### 제6조 거래 은행의 선정 등

① 은행은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더라도 송금 중계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은행을 정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이 송금 중계은행이나 송금 수취은행 등에 송금과 관련하여 지급 지시를 할 경우 금융기관간에 통신

문 교환에 관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7조 수수료 및 비용

① 송금수수료, 전신료 및 기타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은행이 송금 신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송금 중계은행이나 송금 수취은행 등 제3자가 부과하거나 청구하는 수수료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제 제3자가 그러한 수수료나 비용을 은행에 청구한 경우 고객은 은행이 청구하는 바에 따

라 그 금액을 즉시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및 비용 이외에 본 약관에 따른 송금과 관련하여 은행이 추가로 비용이나 수

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은행이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지

급 하기로 합니다. 단, 고객이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

다.

④ 은행은 제1항의 수수료 및 비용, 그리고 제3항의 청구금에 적용될 지연배상금에 적용할 요율 및 계산방

법을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기로 합니다.

#### 제8조 송금 취소

① 고객이 이미 실행한 송금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은행은 송금 중계은행이나 송금 수취 은행에게서 돌려받

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은행은 이미 받은 송금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② 은행은 송금 수취은행 등이 공제한 비용 및 수수료, 그리고 은행이 부담한 비용이나 은행이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에서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고객이 원화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반환할 당시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

용하여 지급합니다.

#### 제9조 면책

다음 중 어느 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고객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의 착오 또는 송금 증빙서류의 미비

나.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의 법률, 법원이나 감독기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제약

#### 제10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

합니다. 다만, 약관 변경 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

별통지 합니다. 다만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칙<개정 2020.3.31>

이 약관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5.29>

이 약관은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